

【양도소득세 및 상속·증여세】

(4)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(상증법 §45의5)

현 행	개 정 안
☐ 특정법인*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* 지배주주등(지배주주+친족)의 주식보유비율이 30% 이상인 법인 ○ (증여자) 특정법인 지배주주*의 특수관계인 * 지배주주 :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 ○ (증여자의 거래대상) 특정법인 ○ (수증자)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* * 자기증여분 과세 제외	☐ 증여자 적용범위 명확화 ○ (증여자)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 포함 ○ (좌 동)

〈개정이유〉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